

정 정 신 고 (보 고)

2026년 8월 19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삼성KODEX 미국나스닥10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21. 3.15
3. 정정 사유: 해외주식 정의 문구 정비
4. 정정요구 · 명령 관련 여부 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목	변경전	변경후
제32조(투자대상 등)	① 집합투자업자는 ____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과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주권,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법 제4조제8항에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발행한 것(이하 "해외주식"이라 한다)	① 집합투자업자는 ____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)으로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(이하 "해외주식"이라 한다)
부 칙	(신 설)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6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 (해외주식 정의 문구 정비)